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40호의10서식] <개정 2022. 3. 31.>

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

(앞쪽)

공 동 사업장	① 상호	②사업자등록번호
	③ 소재지	④ 개업일
대표공동 사업자	⑤ 성명	⑥주민등록번호
	⑦ 주소	⑧ 전화번호

⑨ 소득구분 코드	부동산임대업(30), 부동산임대업외(40)	⑩전환정비사업 조합원 등	여1 / 부2	⑪ 주업종 코드	
⑫신고유형 코드	자기조정(11), 외부조정(12), 성실납세(13), 간편장부(20), 추계-기준경비율(31), 추계-단순경비율(32)			⑬ 과세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	

총수입금액		⑯ 필요경비	⑰ 소득금액(⑮-⑯)
⑭ 직전 과세기간	⑮ 해당 과세기간		

소득금액 등 분배내용

공 동 사 업 자		⑳ 분배 비율	소득금액 등 분배금액			
⑱ 성 명	⑲ 주민등록번호		㉑ 수입금액	㉒ 소득금액	㉓ 가산세	㉔ 특별징수세액
합 계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작 성 방 법

1. ⑨ 소득구분코드: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"(30)"에, 그 밖의 사업소득은 "(40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2. ⑩ 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「주택법」 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「소득세법」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"여1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3. ⑫ 신고유형코드: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"○" 표시를 합니다.

   가. 자기조정(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): 11

   나. 외부조정(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): 12

   다.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·납부하는 경우:13

   라.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: 20

   마.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: 31

   바.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: 32

4. ⑬ 과세기간 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9쪽 ⑫ 과세기간개시일과 ⑬ 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.

5. 총수입금액 (⑭·⑮):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
6. ⑯ 필요경비: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.

7. ⑰ 소득금액: (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- ⑯ 해당 연도 필요경비)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.

8. ㉓ 가산세: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「소득세법」 제81조제1항(지급명세서미제출·지연제출가산세)·제3항(계산서 관련 가산세)·제4항(증빙불비가산세, 2007. 7. 1. 이후 적용됩니다)·제5항(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)·제6항(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)·제7항(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)·제8항(무기장가산세)·제9항(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, 2008. 1. 1 . 이후 적용됩니다)·제10항(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, 2007. 7. 1. 이후 적용됩니다)·제11항(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, 2007. 7. 1. 이후 적용됩니다)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.

9. ㉔ 특별징수세액: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.

※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